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10 발의연월일: 2024. 7. 16.

발 의 자:임미애·최기상·신정훈

김용민 · 임오경 · 이병진

송재봉 · 정성호 · 한민수

김용만 • 이재강 • 김정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%를 차지하고, 농업소득의 33%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의 안정적인 수급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함.

이에 식량안보 강화와 적정 수준의 쌀 수급 및 관리를 위해 쌀 이외의 밀,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,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,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, 양곡가격안정제를 시행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자 함.

주요내용

가.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,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,

식량자급률 제고,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(안 제1조).

- 나. 공공비축양곡을 미곡・밀・콩으로 정의함(안 제2조).
- 다.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,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 (안 제3조).
- 라.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의3 신설).
- 마.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 의4 신설).
- 바.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13조).
- 사.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15조의2 신설).
- 아.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(안 제16조의3 신설).
- 자.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16조의4 신설).
- 차.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용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

근거를 마련함(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).

- 카. 양곡(밀, 콩 등)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(안 제22조).
- 타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의2).

법률 제 호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확보함으로써"를 "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"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"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"을 "미곡·밀·콩"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"기준가격"이란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(직전 5년 중 최저가 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, 농가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"정부관리양곡"을 "양곡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매년 정부관리양곡"을 "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심의·의결을 거쳐 매년 양곡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하고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한다"를 "하고, 지체 없이 국

-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 - 3.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
 - 4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중 양곡에 관한 사항

제5조제1항 중 "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"를 "제16조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" 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판매가격은"을 "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"로 한다.

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의3(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(이하 이 조에서 "보관시설"이라 한다)에 대 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 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

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 제9조의4(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용)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, 보관, 가공, 공급 등 수급을 종합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용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·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・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"매입·판매가격"을 "매입·판매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, 매입·판매가격"으로 한다.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무수입양곡(「호주 정부, 중화인민공화 국 정부, 대한민국 정부, 타이왕국 정부,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 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」에 따른 의무수입양곡을 말한 다)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,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의2(양곡가격안정제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 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 비자를 보호하며,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 따라 확정·고 시된 양곡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 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(이하 "양곡가격안 정제도"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 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 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양곡의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・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 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보장제도의 차액(기준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 한다.

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매입·판매 물량의 산정, 매입·판매의 시기·절차"를 "매입·판매의 절

차"로, "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·운영 및 협의절차에 관련된 사항은"을 "사항은"으로 한다.

3.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

제16조의2 중 "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"를 "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지급대상자 등으로"로 한다.

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3(양곡수급관리위원회)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- 1. 제15조의2에 따른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, 기준가격, 차액 의 지급비율
 - 2.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
 - 3.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
 - 4.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·판매여부, 매입·판매물량, 매입·판매시기 및 매입·판매가격
 - 5.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
 - 6.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

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- 1.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
- 2.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
- 3.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
- 4.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
-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
- 2.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
- 3. 학계,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
- 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의4(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)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

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4조제2 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및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(이하 "논타작물"이라 한다)의 재배면적을 연도별 로 관리하고, 논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 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, 시설장비 지원,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6조의5(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·운용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, 수요, 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, 분석, 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용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관 또는

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통계나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 ·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의6(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)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 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
 - 2.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
- 3.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제22조의 제목 중 "미곡유통업"을 "양곡유통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1항 중 "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"을 "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특별 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·구청장(이하 이 조에서 "지방자치단체장"이라 한다)은 양곡"으로,

"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"을 "양곡 매입 및 매입한 양곡"으로, "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"을 "종합적인 양곡의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농림축산식품부장관"을 "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"으로, "미곡의"를 각각 "양곡의"로, "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"을 "미곡종합처리장, 콩종합처리장 등 양곡"으로 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조의2(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수 있다.
 - 1.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
 - 2.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 개발
 - 3.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
 - 4.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 양곡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국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
- 2.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.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

따르지 아니한 자

- 2.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
- 3.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통계나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양곡의 효율	제1조(목적)
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	
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	
을 안정적으로 <u>확보함으로써</u>	<u>확보하고 생산</u>
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	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
로 한다.	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
	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
	지속가능과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	
다.	
1. ·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"공공비축양곡"이란 양곡부	3
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	
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	
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	
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	
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	<u>미곡·밀·콩</u>
는 양곡을 말한다.	
<u><신 설></u>	3의2. "기준가격"이란 양곡의
	수확기 평년 가격(직전 5년
	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

4. ~ 7. (생략)

제3조(<u>정부관리양곡</u>의 수급계획 수립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<u>매년 정부관리양곡</u>의 수급 계획(이하 "양곡수급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야 한다.

-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· 2. (생략)
- 3.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. 이 하 같다),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, 농가경영상황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 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・의결을 거쳐 고시 한 가격을 말한다.

4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<u>양곡</u>의 수급계획 수립) ①
------<u>제16조</u>
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
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매년
양곡-----

- 2 -----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관리
- 4.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제14조제2항제2호에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

4. (생략)

- ③ (생략)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 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- 제9조(정부관리양곡의 판매) ① 지 (생 략)
 -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의 <u>판매가격은</u>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.

	정한 자급목표 중 양곡에 관
	<u>한 사항</u>
	<u>5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
	③ (현행과 같음)
	4
	<u>하고, 지체 없</u>
	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
	출하여야 한다.
젟	5조(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)
	①
	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
	관리위원회의 심의・의결을 거
	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
	② (현행과 같음)
저	9조(정부관리양곡의 판매) ①
	(현행과 같음)
	②
	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
	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
	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

③ ~ ⑤ (생 략) <신 설> 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3(정부관리양곡 보관 실

태 점검 등) ① 농림축산식품
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
설(이하 이 조에서 "보관시설"
이라 한다)에 대하여 농림축산
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
한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 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 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 과를 공표할 수 있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 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 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렁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

<신 설>

용) ①・② (생 략)

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・판매 시장가격으로 한다.

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의4(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・운용)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의 매입, 보관, 가공, 공급 등 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•운용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•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 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 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 템의 구축・운용에 필요한 사 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한다.

제10조(공공비축양곡의 비축・운 제10조(공공비축양곡의 비축・운 용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매입·판매 <u>가격</u>은 매입·판매지역의 당시 <u>물량은</u>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・의결 ④ (생 략) 제13조(수입양곡의 관리 등) (생

<신 설>

략)

<신 설>

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, 매입·판매가격-----

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수입양곡의 관리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무 수입양곡(「호주 정부, 중화인 민공화국 정부, 대한민국 정부, 타이왕국 정부,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」에 따른 의무 수입양곡을 말한다)이 국내 양 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,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료용으로 공급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.

제15조의2(양곡가격안정제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 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 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

면,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 따라 확정·고시된 양곡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 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(이하 "양곡가격안정제도"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한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양곡의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 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준 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 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가격안정제도의 차액(기준가격 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.

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제 수급 관리)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 안정대책을 수립・시행할 수 있다.

1. • 2. (생략)

<신 설>

- ② ~ ④ (생 략)
-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 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, 매입・판매 물량의 산정, 매입 • 판매의 시기 • 절차, 매입 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 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 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・ 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- ⑥·⑦ (생 략)

이하 같다)의 지급비율을 제16
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
원회의 심의・의결을 거쳐 매
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세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
수급 관리) ①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5
ا ا ا ا ا ا ا ا ا ا ا ا
<u>매입·판매의 절차</u>
)] 중] Ó
<u>사항은</u>

⑥・⑦ (현행과 같음) 제16조의2(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제16조의2(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)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 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 곡을 재배하고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 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 게 할 수 있다.

<신 설>

재배면적 관리)
<u></u> 「농업·농촌 공
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
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
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
<u>자 등으로</u>
제16조의3(양곡수급관리위원회)
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
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
사항을 심의・의결하기 위하여
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
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
<u>다)를 둔다.</u>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
<u>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u>
1. 제15조의2에 따른 양곡가격
안정제도의 대상 품목, 기준
가격, 차액의 지급비율
2.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

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

- 3.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
- 4.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 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·판매 여부, 매입·판매물량, 매입· 판매시기 및 매입·판매가격
- 5.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 면적의 조정
- 6.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- 1.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

 정책관
- 2.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3.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

4.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 측본부장

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 산자단체 대표
- 2.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 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
- 3. 학계, 연구계 등에서 양곡

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

 전문성을 가진 사람
- 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의4(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)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 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 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

<신 설>

하여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및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(이하 "논타작물"이라 한다)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, 논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수립·시행하여야한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 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 단지 조성, 시설장비 지원, 판 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논타 작물 재배지원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6조의5(미곡수급관리시스템
 구축·운용) ① 농림축산식품
 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
 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,
 수요, 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
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
 으로 수집, 분석, 관리하기 위
 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
 ·운용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 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통계나 자료의 입력 또 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 간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

<신 설>

라야 한다.
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의 구축・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 시스템의 구축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의6(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)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 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
 - 2.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손실을 보전하는 사업
 - 3.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 자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

제22조(미곡유통업의 육성) ① 농 지 립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 통구조개선・품질향상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・선별・보관・가공・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 성하여야 한다.

②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</u>은 농업 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<u>미곡의</u> 유통기능을 능률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자에게 <u>미곡종합처리장</u> 등 미곡을 건조·보관·가공· 유통·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<u>미곡의</u> 매입에 필요한 자금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 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시	-업
---	----

제22조(<u>양곡유통업</u> 의 육성) ① <u>농</u>
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특별시장
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
지사 • 특별자치도지사 • 시장 •
군수·구청장(이하 이 조에서
"지방자치단체장"이라 한다)은
양곡
<u>양곡 매입 및 매입한</u>
양곡
종합적인 양곡의 유통
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
방자치단체장
<u>o</u> t
<u>곡의</u>
미곡종합처리장, 콩종합처
<u>미곡종합처리장, 콩종합처</u> 리장 등 양곡
<u>리장 등 양곡</u>
<u>리장 등 양곡</u>

<신 설>

제3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

- 제22조의2(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)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·홍보 사업
 - 2.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 개발
 - 3.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
 - 4.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 양곡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국 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원할 수 있다.
 - 1.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
- 2.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개 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제36조(과태료) ① -----

부과한다.	
<u><신 설></u>	1.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
	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
	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
<u><신 설></u>	2.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
	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
	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
	<u>아니한 자</u>
<u><신 설></u>	3.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
	특별한 사유 없이 통계나 자
	료의 입력 또는 제출 요청에
	따르지 아니한 자
<u>1.</u> ~ <u>6.</u> (생 략)	<u>4.</u> ~ <u>9.</u> (현행 제1호부터 제6
	호까지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